

부가가치세분야 ④



글/ 임현석 세무사

17.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폐업시 추가징수 여부

Q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사업을 폐업하여 동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 동법의 규정에 의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하는지요?

A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불가능시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은 후 폐업할 때 폐업이후에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서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2. 이때에 대손금액을 변제한 당초의 매입자가 사업자로서 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추징된 경우로서 대손세액변제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8. 부가가치세 경정시 적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Q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거래처 부도분 매출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이 적출되어 세액을 추정받았는 바, 이때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에 따라 추징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Q 당사(이하 "갑"이라고 함)는 건설회사로서 타 회사(이하 "을"이라고 함)와 공동으로 "갑"의 지분 60%, "을"의 지분 40%로 토목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양사는 합의로 작성한 공동도급 운영지침에 따라 "갑"이 원가를 취합하고 취합한 원가를 40%만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 형태로

공동원가를 정산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A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 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 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이나,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0.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신고가능 여부

Q 개인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신고기한 후 부가가치 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A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의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10%, 납부불성 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경과일수*5/10,000 등 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1.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Q 고속버스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 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당 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 가능한지요?

A 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업자가 아닌 여객 운송업자(항공기, 고속버스여객운송업자),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료부터 운송용 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 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에 대하여는 매 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Q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 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 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 업자로서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합니다.

23.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유무

Q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되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을 고무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 디에 있으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 는지 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자 란은 인쇄하거 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한다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수 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 래내용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 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끝>

() **인간 최대의 승리는** ()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 플라톤(고대 그리스 철학자)-
 () ()